

2018년도

## 2018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

### 제12차 회의록

- ▣ 회의일시 : 2018. 10. 19.(금요일), 15:00
- ▣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- ▣ 출석위원 : 서연호(위원장), 김영운, 정해임, 정형호, 한경자, 한상일, 허순선, 심승구, 양종승, 유영대, 정종수 (이상 11명)
- ▣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1.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.

제1호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,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제2호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)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제3호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제4호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

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.

2.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·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.

3.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,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.

# 목 차

## 【검토사항】

-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1 | ‘불복장작법’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검토 | 비공개 |
| 2 | ‘궁중다례의식’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       | 공개  |

검 토 사 항

## 1. ‘불복장작법’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검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의 비공개)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.

## 검토사항

안건번호 무형2018-12-002

## 2. ‘궁중다례의식’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

### 가. 제안사항

‘궁중다례의식’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2017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2차 회의(‘17.12.19) 검토를 거쳐, 2018년도 신규종목 지정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종목 지정가치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.

### 다. 주요내용

#### 1) 종목 현황

- 종목명칭 : 궁중다례의식(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7호, ’01.12. 지정)
- 주요 전승자 : 김의정(‘41년 / 여 / ’01.12. 서울시 보유자 인정 /명원문화재단 대표)

#### (2) 추진경과

- 2018년 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조사 계획 수립
- 무형문화재위원회 조사자 검토 및 추천(‘18.2.23)
-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관련 자료 제출(‘18.7.20.)
-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조사(‘18.7.20~8.18)

#### 3) 지정가치 조사

- 조사자 : 관계전문가 4인
- 조사기간 : 2018.7.20.~8.18.
- 조사내용 :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지표 평가

## 라. 검토의견

- 궁중다례의식은 2001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되었음
- 종목 지정가치 조사 결과, 조사위원 대부분이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
- 지정가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,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가치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

## 마. 의결사항

- 부결함
  - 시도무형문화재로 존치하여 보존 전승토록 함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 / 부결 10명, 제척 1명

## 바. 특기사항 : 없음

끝.